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795호 2010. 11. 29.(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62호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고시 -----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26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265호 2010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체력검정 합격자명단 및 면접시험 시행공고 ----- 3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266호 2010년도 도로환경미화원 및 드림파크로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면접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 3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267호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조례(안) 입법예고 ----- 40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뒷면계속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268호 분묘개장공고(변경) ----- 4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270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급고 지정 공고 ----- 47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62호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고시

인천 서구 석남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에 설치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10점)을 고시합니다.

2010. 11.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개 요

1. 지적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이하 좌표와 같음)
2. 좌표

일련번호	명 칭	좌 표	
		X좌표(m)	Y좌표(m)
별지참조			

3.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 소 재 지 : 인천 서구 석남동 622번지 일원
- 측량연월일 : 2010년 11월 2일(지적도근점 10점)

4. 측량성과보관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및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본부 서구지사

■ 열람안내

○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하는 분은 토지정보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 지 】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일련번호	명 칭	세계측지계		중부좌표		계양좌표		비고
		X	Y	X	Y	X	Y	
6819	지적도근점	544571.714	170983.371	444265.72	170912.98	-5876.10	-3784.08	
246	지적도근점	544480.344	170996.902	444174.35	170926.51	-5967.43	-3770.31	
6820	지적도근점	544480.11	171081.839	444174.12	171011.45	-5967.44	-3685.37	
247	지적도근점	544480.202	171153.624	444174.22	171083.23	-5967.16	-3613.58	
6821	지적도근점	544585.133	171159.298	444279.15	171088.89	-5862.21	-3608.19	
6822	지적도근점	544531.792	171156.273	444225.81	171085.87	-5915.56	-3611.07	
6823	지적도근점	544572.823	171351.116	444266.85	171244.72	-5874.12	-3452.33	
6824	지적도근점	544519.862	171312.156	444213.88	171241.76	-5927.09	-3455.15	
248	지적도근점	544480.453	171284.647	444174.48	171214.25	-5966.57	-3482.55	
6825	지적도근점	544476.494	171225.857	444170.52	171155.46	-5970.68	-3541.33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26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

1. 제정취지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목적에 대한 내용
- 상위 법령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운영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따른 구성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복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560-413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용) ①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라 한다)는 감독 1명, 선수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감독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 또는 가맹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천서 또는 지원서를 검토하여 우수한 선수를 임용한다.

1.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졸업예정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2. 일반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④ 감독 및 선수로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지원서 또는 추천서 1통
3. 서약서 1통
4. 경력증명서 1통
5. 건강진단서 1통
6.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7. 명함판 사진 2매

⑤ 감독 및 선수의 계약 또는 재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감독은 3년 단

위로, 선수는 1년 단위로 하며, 계약 또는 재계약 개시 전년도 12월중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운동경기부 입단 계약서에 따라 입단 약정을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수의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⑥ 임용된 감독 및 선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신분보장) ① 감독 및 선수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② 감독 및 선수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선수의 기량이 우수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1. 감독 - 60세
2. 선수 - 35세

제4조(지휘·감독) ① 운동경기부는 문화관광체육과 소속하에 두고 감독 및 선수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감독은 선수 발굴, 육성 및 지도감독의 책임을 진다.

③ 감독은 선수 중에서 주장을 임명하고, 주장은 감독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복무) ① 감독 및 선수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으로 하며,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은 감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무일도 훈련 및 출전을 명할 수 있다.

③ 감독 및 선수는 연간 20일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가 및 경조사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2조와 제23조를 준용한다.

④ 감독 및 선수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6개월 이내
2. 훈련 및 경기 이외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2개월 이내
3.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첨부
- ⑤ 감독 및 선수가 각종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고, 휴가일수는 별표 1과 같다.
- ⑥ 감독 및 선수는 휴가 등을 실시하기 전 복무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실시한다.
- ⑦ 감독 및 선수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6조(훈련 및 대회참가) ① 감독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선수 훈련 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감독은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 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일정별 계획을 작성하여 훈련 및 대회 참가 1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 ① 구청장은 감독 및 선수에 대한 징계 요구 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② 징계의결 시 징계당사자에게는 진술권이 있고, 위원회는 징계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8조(면직) ① 구청장은 감독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1.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2. 감독 및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3. 각종 경기에서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 되었을 경우
4. 지정된 숙소에서 무단이탈 하였을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6.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할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지휘감독자의 명에 불응하였을 경우

8. 감독이 전국체육대회에서 3년간 1회 이상 3위 안에 입상하지 못하였을 경우

9. 선수가 전국규모대회에서 2년간 1회 이상 3위 안에 입상하지 못하였을 경우

10.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면직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다른 팀으로의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감독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급한다.

제9조(합숙소 설치 운영) 선수의 합숙훈련 및 숙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 운영한다.

제10조(관용차량운행) 운동경기부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원활한 이동을 위해 차량을 구입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수 등) ① 감독 및 선수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연봉제로 하고, 연봉은 퇴직금을 포함한다.

② 감독 및 선수의 월 보수는 연봉액 중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의 12분의 1로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연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감독 및 선수의 연봉은 별표 2의 점수산정기준표에 따라 배점하며, 배점에 따른 등급별 연봉액은 별표 3을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할 수 있다.

2. 감독 및 선수가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여 4회 이상 대회에 출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성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제12조(출전비용 등) ① 감독 및 선수가 전지훈련, 대회출전 및 우수선수 유치를 목적으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비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고, 감독은 5급 공무원, 선수는 7급 공무원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식비는 충분한 영양섭취로 체력 및 경기력 유지를 위하여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제13조(급식비) 선수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상금) ① 감독 및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에는 선전을 통하여 상위에 입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에 따라 선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과 사기양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라 입상보상금을 지급하고, 감독의 각종 대회 입상보상금은 팀 참가 시 해당부 선수 중 최고 수혜 선수와 동일금액을 지급한다.

③ 입상보상금과 별도로 감독 및 선수에게 각종 대회에 출전한 연간 입상성적을 종합하여 별표 7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며, 성과금은 점수당 1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독의 성과금지급 점수는 선수 중 가장 높은 점수의 선수와 동일한 점수로 한다.

제15조(우수선수 유치비) ① 구청장은 우수선수 유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6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선수 유치비는 최초 임용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선수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치비가 지급되어 임용된 선수는 별표 6과 같이 최소계약 유지기간 이상 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며, 의무기간 내 퇴직 시에는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 및 우수선수 유치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이 종료된 우수선수에 대하여 재계약을 할 경우 우수선수 유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료보상) ① 감독 및 선수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에 대비하여 감독 및 선수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훈련복 및 장비지급 등) ① 감독 및 선수에게 각종 대회 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훈련복과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훈련복 지급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감독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훈련복 및 장비 구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퇴직급여) ① 운동경기부에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사람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급여를 「공무원연금법」 제48조에 따라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퇴직자의 퇴직급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퇴직급여 청구서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퇴직급여 청구서 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 별 휴 가 일 수

(단위 : 일)

구 분	휴가일수		
	종합우승	단체 1위	개인 1위
전국규모대회	3	2	1
전국체전	7	4	3
국제대회	10	7	5

[별표 2]

점수산정기준표

구분	배점	기 준	비고
경 력	10	○ 선수단 근무경력(인천광역시 서구 입단) - 3년 이상 : 10점 - 2년 이상 3년 미만 : 8점 - 1년 이상 2년 미만 : 6점 - 1년 미만 : 4점	
경기력	70	○ 최근 1년간 전국대회 입상경력 (일반부, 대학부, 고등부 활동 포함) - 국제대회 단체·개인전 : 1위 40점, 2위 30점, 3위 20점 - 전국체전 단체·개인전 : 1위 30점, 2위 20점, 3위 15점 - 전국규모 단체·개인전 : 1위 18점, 2위 15점, 3위 13점	
복무등	20	○ 복무상황 등 - 근무태도 : 10점 (탁월10,우수9,보통8,미흡7,부진6) - 기여도 : 5점 (탁월5,우수4,보통3,미흡2,부진1) - 장래성 : 5점 (탁월5,우수4,보통3,미흡2,부진1)	

※ 감독 및 선수를 신규임용 할 경우에는 “복무등”의 배점을 10점으로 하고, 감독의 “경기력” 점수산정은 선수 전원의 평균점수로 한다.

[별표 3]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등급별 연봉

직 책	등 급	연 봉 액		비 고
		점 수	보수액	
감 독	A	90점 이상	46,000,000	
	B	80점 이상 90점 미만	43,000,000	
	C	70점 상 80점 미만	40,000,000	
	D	70점 미만	37,000,000	
선 수	A	90점 이상	40,000,000	
	B	80점 이상 90점 미만	36,000,000	
	C	70점 이상 80점 미만	32,000,000	
	D	60점 이상 70점 미만	28,000,000	
	E	60점 미만	24,000,000	

※ 감독 및 선수의 연봉 결정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가능

[별표 4]

대회출전 선전 장려금 지급액

구 분	국 제 대 회	전국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	비 고
금 액	선수당 500,000원	팀당 500,000원	팀당 300,000원	

※ 국제대회 : 올림픽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그 밖의 국제대회는 전국규모대회와 동일하게 본다.)

[별표 5]

입상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입 상	종 목 별		지 급 액 (단위 : 원)		
			1 위	2 위	3 위
	선수	단체	400,000	300,000	200,000
		개인	300,000	200,000	100,000

- 비고 1) 입상보상금 지급은 동일인이 단체분야와 개인분야에서 각각 2개 이상 입상한 경우 각 분야별 최고 입상성적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 2) 단체·개인전 분야별로 전국체육(전국규모)대회는 그 보상금액의 100%, 국제대회는 그 보상금액의 200%를 추가 지급한다.

[별표 6]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

급수	유치비 기준	최소계약 유지기간	지급액
1급	○ 1년 이내에 국가대표선수로서 국제대회(올림픽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개인부문 3위 이내의 입상 경력자	5년	50,000,000원
2급	○ 2년 이내에 국가대표선수로서 국제대회(올림픽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개인부문 3위 이내의 입상 경력자	3년	30,000,000원
3급	○ 현재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어 활약하고 있는 사람 ○ 1년 이내에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1위에 2회 이상 입상 경력자	2년	20,000,000원
4급	○ 1년 이내에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1위에 1회 이상 입상 경력자 ○ 1년 이내에 국가대표선수로 활약한 사람	2년	15,000,000원
5급	○ 1년 이내에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내의 입상 경력자	2년	10,000,000원

- 비고) 1.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 기준은 해당선수의 신규 입단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국가대표선수의 자격 기간은 대한인라인롤러연맹의 국가대표선수 선발지침을 준용한다.

[별표 7]

성과금지급점수 산정기준

(단위 : 점)

구 분	1위	2위	3위	비고
국제대회	100	80	60	※ 동일인이 같은 대회 의 단체분야와 개인분야 에서 각각 2개 이상 입 상한 경우 각 분야별 최 고 입상성적에 대하여 점수 산정한다.
전국체육대회	60	40	30	
전국규모대회	15	10	7	

- 비고) 1. 국제대회 : 올림픽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그 밖의 국제대회는 전국규모대회와 동일하게 점수를 산정한다.)
2. 각종 입상자의 신기록 수립 시 추가로 가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대회신기록 3점, 한국신기록 5점, 아시아신기록 10점, 세계신기록 20점)

[별표 8]

훈련복 지급기준(연간)

구분	츄리닝	유니폼	땀복	잠바	파카	운동화	가방	T셔츠	기타
지급량 (1명당)	3	1	2	1	1	2	1	3	필요시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도력이 탁월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여자 인라인롤러부 감독으로 추천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인천광역시 ○○ 경기단체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지 원 서

- 종 목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 본인은 현재 _____에 소속중인 졸업 예정자로서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여자 인라인롤러부)에 입단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지원하며, 학교장(총·학장)의 추천과 함께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본 인 : (인)
 보호자 : (인)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학 교 명 : (인)
 학교장(총·학장) : (인)

위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여자 인라인롤러부)에 입단을 승낙합니다.

입 단 단 체 :
 대 표 자 : (인)

중앙경기단체확인란	
	교부자인

발급번호	
------	--

※대한 체육회 서식 사용 가능

(별지 제3호서식)

추천서

○ 주 소 :

○ 종 목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_____ 선수로서 우수한 자질과 경기력을 보유하여

이에 추천합니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인천광역시 ○○ 경기단체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지 원 서

- 종 목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여자 인라인롤러부)에 입단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일, 입단 후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본 인 (인)
보호자 (인)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최종학력			
경 력			
주요경기 실 적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신분증
사진
No.
성명 :
인천광역시서구청

<뒷 면>

소 속 : _____
직 명 : _____
성 명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 .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세로 63×90mm)

(별지 제6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인사기록카드

부 명	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성 명 (한 글)	본관	성별	생년월일	본적				생활근거지	호주성명 및 관계			
				주소								
병 력 관 계 개 인 신 상 관 계	해당 없음	미 필			복 무							
		역종	체격등위	미필사유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영년월일	전역년월일	MOS
	신체 사항 재산 사항 정 당 사회단체	신 장	체 중	시력		색 맹		혈액형	건강상태	종 교	취 미	특기
		동 산		부 동 산		가 옥		부업명	부업일수	재산총액		
		단 체 명		직책	가입년월일	탈퇴년월일	단 체 명		직 책	가입년월일	탈퇴년월일	
	가 족 사 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직업직장직위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직업직장직위	
학 력	기 간		학교명 및 전공과목		학위	기 간		학교명 및 전공과목		학위		
전 력	기 간		근무처		직위	기 간		근무처		직 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이 면 사 항	임용년월일	직 위		확 인	퇴직년월일	직위		확 인		
연 봉	년 월 일	연봉	근무일수	확 인	년 월 일	연봉	근무일수	확 인		
임 용 전 경 기 실 적	기간	대 회 명		장 소	전 적	기간	대 회 명		장 소	전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기간	대 회 명		장 소	전 적	기간	대 회 명		장 소	전 적

(별지 제7호서식)

퇴 직 금 여 청 구 서

성 명		생년월일	.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퇴 직 년 월 일	
퇴직당시 소속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여자 인라인롤러부)			퇴직당시직명	
첨부 : 사직서 1부 년 월 일 청구인 : (인)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					
소 속	직 명	근 무 기 간		발 령 청	확인(업무담당)
		. . . ~ . . . (총근무일수 :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	
○ 지급금액 : 금 원정(금 원)					
○ 퇴직전 : 원 월평균 보수		○ 퇴직금 : 원 산출액		○ 퇴직금 전환금 : 원 납부액	

결	담당자	체육진흥 담	문화관광 체육과장
재			

※ 비고 : 청구인은 점선 윗부분만 직접 기입한다.

(별지 제8호서식)

퇴직급여 청구서 접수대장

접수번호	소 속	직 위	성 명	퇴직일자	접수일자	비 고

(별지 제9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여자 인라인롤러부)에 입단을 지원하면서 관계규정을 충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단을 명하여도 이의 없음을 서약합니다.

1. 월 2회 이상 훈련에 불참하거나 무단지각 및 무단조퇴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훈련 및 대회출전에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4. 직장인,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년 월 일

소 속 :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여자 인라인롤러부)

주 소 :

직 명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입단 계약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감독, 선수)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의 증명을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상호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및 의무)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라 한다) 발전을 위하여 갑은 을에게 합의된 연봉을 지급할 의무를 갖고, 을은 갑의 규정을 준수하며 그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의무를 갖는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준연봉) 갑은 제2조의 계약기간에 을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일금 원(세금포함)을 기준연봉으로 하여 이 계약서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연봉의 조정) 갑은 이 계약에 의한 을의 이행 정도와 경기실적 결과에 따라 연봉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

제5조(지급방법) 갑과 을은 연봉지급방법에 대하여 양자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방법 : 연봉액 중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을 12회로 분할 지급한다.
2. 지급시기 :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조(포상금) 갑이 을에게 출전 요구한 경기종료 후 그 성적 여하에 따라 갑은 을에게 포상금(입상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권리와 의무) ① 갑은 규정과 계약서상의 준수사항을 을로 하여금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갑에게 명예훼손이나 재산상의 손실이 오지 않도록 독려할 권리가 있는 반면, 모든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한 을의 이익보호와 을의 권리행사에 적극 협조한다.

② 을은 규정과 계약서상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계약기간 동안 갑이 요구하는 경기 및 갑의 훈련을 포함한 모든 행사에 성

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을은 갑의 의무이행 도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 갑이 지정한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을에게 수혜자격이 있다. 다만, 을과 갑의 계약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건강을 해치는 어떠한 활동도 하여서는 안 된다.
5. 을은 갑의 규정 및 계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훈련과 관련된 비밀이나 내부적 사항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지불의 한계) 을은 제3조 및 제6조에 명시된 것 이외의 보수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9조(사고 시 보수지급) 을(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부 활동이 불가능 하였을 때 31일째 되는 날부터 훈련 및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날에 대하여 1년을 기준으로 연봉의 330분의 1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상 등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활동경비의 부담) 갑은 계약에 명시된 연봉 외에 계약기간 동안 을이 갑을 위하여 전지훈련, 대회참가로 출장하는 경우의 활동경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를 부담한다.

제11조(용기구) 갑은 훈련 또는 경기에 필요한 용기구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상해보험)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실시한 훈련 및 경기로 인하여 상해(사망 포함)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상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갑이 부담할 수 있다.

제13조(건강진단) 을은 계약 체결 전 육체 및 정신적인 면에 대한 결함 유무를 증명하기 위해 종합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아 그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4조(을의 계약위반)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 계약을 파기한다.
2. 갑이 입은 피해액의 보상에 필요한 금액을 을로부터 배상 받는다.

제15조(계약갱신) 선수계약 갱신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계약해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제15조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 내용에 저촉될 때에는 계약을 자동 해지한다.

제17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분쟁 발생시에는 인천지방법원의 조정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서 구 청 장 : (인)

“을”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별지 제13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여자 인라인롤러부) 훈련일지

담당자	체육진흥 담당	문화관광체육 과장	결 재

년 월 일

작성자 : (인)

참석 현황	참석대상	참석인원	불참자	불참자내역				
				계	교육	연가	병가	기타
훈련 내용	시 간		훈련내용			장 소		
특이 사항								

(별지 제15호서식)

징계 의결 요구서

인 적 사 항	①성명	한 글		②소 속		③직 위	
		한 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재직기간	년 월
	⑥주소						
⑦ 징계 사유	“별첨 참조”						
⑧징 계의 결요 구권 자의 의견	“별첨 참조”						
<p>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인천광역시서구청장</p> <p>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p>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265호

신조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한 공인의 인영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25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인신조 사유
 - 인증기 구입(가좌4동)
2. 공인의 사용 예정일 : 2010년 12월 6일
3. 신조공인 인영

“별첨 참조”

신 조 공 인 인 영

신조 공인명	규 격(cm ²)	신조 공인인영	비 고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가좌4동민원전용1 (인증기)	2.4×2.4		인증기 구입
가좌4동장인 /민원전용1 (인증기)	2.1×2.1		인증기 구입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 - 1266호

2010년도 도로환경미화원 및 드림파크로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면접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2010년 11월 23일 시행한 2010년도 도로환경미화원 및 드림파크로환경미화원 신규채용
면접시험 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면접시험 합격자 명단

【도로환경미화원】

○ 25세이상 ~ 40세미만

응시번호	성 명	주 소
47	김 세 진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40세이상 ~ 55세이하

응시번호	성 명	주 소
4	송 인 철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드림파크로 환경미화원】

응시번호	성 명	주 소
9	이 문 성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 신원조회 관련서류제출 안내

가. 일 시 : 2010. 11. 30(화)까지

나.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3층 청소행정과

다.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2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지정병원) 1통
- 신원진술서(원본) 3부

※ 신원조회결과 추후 통보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 2010-1267호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 월 25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기획재정부령 제131호 2010. 3. 3일 일부개정 2010.7.1시행) 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경우 지장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사실조사 의뢰의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근거 및 목적(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사실조사”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사실조사 의뢰에 따른 협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12월15일 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경제지원과장, 우편번호 : 404-701, 주소: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323(심곡동244번지), FAX:560-443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를 수행 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 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전담조직과 인력이 없는 경우
 3. 관할지역이 광범위하여 직접 사실조사를 하기에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 할 수 있다.
- ③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절차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조사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한 사실조사 업무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문서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사전에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의뢰의 취소)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실조사 업무의 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 - 1268호

분 묘 개 장 공 고(변경)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공고 합니다.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2. 분묘의 위치 및 기수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49기)

소재지		지번		기수		비고
전	후	전	후	전	후	
검암동	변경없음	산73-2	변경없음	49	50	

※ 세부 위치 및 현황도는 구청 사무실 비치

3. 개장사유 : 검암근린공원 국궁장 조성공사 사업 추진

4.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가 개장, 납골(안치기간:10년)

5. 개장 후 안치장소(변경)

당 초	변 경
인천시립 납골당 인천 부평구 부평2동 산52-11	하늘정원 추모공원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

6. 공고기간

- 2010. 11. 29 ~ 2010. 12. 05

7. 문의처 및 신고방법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서구 녹지경관과[(032)560-4803]
- 신고방법 : 연고권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8. 유의사항

- 공사 중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같음합니다.

2010. 11. 29.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270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금고 지정 공고

지방재정법 제77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서구 금고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0. 11. 26.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약정기간 : 2011. 1. 1. ~ 2014. 12. 31. (4년)**
2. **인천광역시서구 구금고 지정**
 - (주)신한은행 [대표이사 이백순]
3. **취급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
4. **주요 취급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 일상경비의 출납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